

온타리오 주 여성을 위한 가정법



모든 여성. 하나의 가정법.
여러분의 권리를 아십시오.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Women's Right to Know

fodf Femmes ontariennes et
droit de la famille
Le droit de savoir

혼인 및 이혼

이 책자는 법률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법률 조언 및 지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정법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경우,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을 구하여 여러분의 선택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구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의 '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책자를 읽어보십시오. 또한 '가정법 변호사 찾기(Looking for a Family Law Lawyer)', '합법적 혼인 및 사실혼 부부의 재산 관련 권리와 의무(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of Married and Co-habiting Partners)', 기타 가정법 주제에 관한 저희 웨비나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저희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에 올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 혼인이란 무엇인가?

캐나다에서 혼인식이 합법적인 것이 되려면 혼인의 두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두 범주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규칙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혼인 연령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범주의 규칙은 혼인식을 치르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1) 온타리오 주에서 혼인이 허용되는 사람은?

합법적 혼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허용되는 사람에 관한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온타리오 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또는 17세일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법원의 허락서가 있으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주/준주마다 다른 연령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b) **만 16세 미만**의 아동은 캐나다 어디서나 부모가 허락해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하는 두 사람 중 하나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혼인식을 축하하거나, 돕거나, 혼인식에 참석하는 것은 형법 위반입니다.

c) 합법적 혼인 연령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성별은 무관합니다.

d) 혼인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등과의 혼인은 불법입니다.

e) 기혼자는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갖는 것이 불법입니다. 배우자가 두 명 이상인 것을 **복혼**이라고 합니다.

- 과거에 혼인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그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추가적 정보가 이 책자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음.)

f)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은 혼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혼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호 동의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것을 '**이해 및 고지에 입각한 동의**' 라고 합니다.

- 강요에 의한 혼인은 합법적 혼인이 아닙니다. 혼인하는 두 사람 중 하나가 혼인을 원하지 않으며 강제로 혼인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혼인식을 축하하거나, 돕거나, 혼인식에 참석하는 것은 형법 위반입니다.

2) 혼인식 요건

혼인에 관한 두 번째 범주의 규칙은 혼인식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혼인할 때는 혼인식을 치르는 주의 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혼인하는 두 사람 모두 혼인식에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혼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앞에 두 당사자 모두 서 있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혼인식을 치르기 전에 당사자가 거주하는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사무소에서 **혼인허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드는 혼인허가서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온타리오 주 내 어디든지 혼인식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혼인허가서를 가져가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혼인이 합법적인 것이 되려면 혼인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종교적 혼인식 또는 민사적(비종교적) 혼인식에 의해 혼인할 수 있습니다.

- 종교적 혼인식: 온타리오 주에서 혼인 주례로 등록된 성직자(목사, 신부, 랍비, 이맘 등)가 합법적인 혼인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혼인식: 판사, 치안판사, 시청 서기, 또는 온타리오 주에서 혼인 주례 면허를 받은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혼인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는 합법적으로 혼인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혼인식을 지켜본 사람 두 명이 혼인허가서에 서명하고, 혼인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된 혼인허가서를 정부 기록보관소에 발송하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서비스 온타리오(Service Ontario)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혼인은 캐나다에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혼인할 경우, 혼인하는 국가의 혼인 요건에 따라 혼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되려면 캐나다 법상의 혼인 허용 규칙(위의 설명 참고)도 준수해야 합니다.

복혼

캐나다에서 배우자를 두 명 이상 갖는 것('복혼')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혼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혼인했을 경우, 한 명의 배우자와의 한 건의 혼인만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복혼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로 이민온 사람의 경우에는 이민 관련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혼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전문 변호사 및 이민 문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거나 여러분과 자녀의 권리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시민인 사람과 혼인하면 나도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이 되나?

캐나다 시민과의 혼인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되려면 준수해야 할 특정한 절차가 있으며,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과 혼인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절차는 따로 없지만,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가 캐나다 영주권자로 살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보증, 시민권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캐나다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웹사이트 **www.cic.gc.ca**를 방문하십시오. 저희의 '이민자, 난민 및 불법체류자 여성의 가정법 문제(Family Law Issues for Immigrant, Refugee and Non-status Women)' 책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혼 및 별거

이혼은 혼인관계를 합법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거**는 혼인관계, 또는 혼인하지는 않고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두 사람이 관계를 종결하고 각자 따로 살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한 부부는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별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먼저 이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붕괴는 힘들고 괴로운 시기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자녀에 관한 조치를 하고, 가족 재산을 분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법 문제에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고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에 관한 FLEW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혼인한 부부가 합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결하려면 법원의 이혼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명령을 받으면 가족 재산 분할, 배우자부양비, 자녀양육비, 그리고 어느 일방의 자녀양육권 또는 자녀면접교섭권 문제를 결정하는 양육 계획 등, 다른 여러 가정법 문제에 관한 판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법원에 가지 않고 재산, 배우자부양비 및 자녀양육비에 관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LEW 웹사이트에서 별거합의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하나?

캐나다에서 이혼 신청을 하려면 둘 중 어느 일방이 이혼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야 합니다. 가정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판결 절차가 시작되며, 이 문서에는 여러분이 법원에 어떤 판결 및 명령을 원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일방이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서에 이혼만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양육권,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비, 가족 재산 분할 방법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도움 없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혼인관계가 붕괴되었으며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별거 생활': 혼인관계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소한 **1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더 이상 혼인한 부부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별거 생활'을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여전히 별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신청은 별거가 시작되자마자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기 전까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간통: 둘 중 어느 일방이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간통이란 혼인한 부부의 어느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3. 학대/잔학: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너무 잔학(학대적)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경우에도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통 또는 잔학의 경우, 이혼이 허락될 때까지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간통 또는 학대/잔학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따라서 사건이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로 법원의 체계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 이혼하는 것이 **1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둘 중 어느 일방이 최소한 1년 이상 외국에서 살았고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할 경우,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이혼으로 인정됩니다.
2. 이혼 신청자가 두 사람 모두 해당 국가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연결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둘 중 어느 누구도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이혼으로 인정됩니다.

어느 국가와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연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를 들면, 둘 중 어느 일방이 원래 그 나라 출신이고, 혼인관계가 종결되었을 때 그 모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또는 이혼 신청자가 이혼을 허락한 국가에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 등입니다.

외국에서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부양비 및 가족 재산 분할에 관한 캐나다의 가정법상의 권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허락된 이혼에 관해 의문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곳 캐나다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한 후 캐나다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자 할 경우, 이곳 캐나다에서 혼인하려면 이혼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명령 등본이 필요합니다. 혼인하고자 하는 주/준주의 캐나다 변호사에게서 해당 이혼이 캐나다 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명령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것이 아닐 경우, 공인번역사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한 번역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종교적 장벽

법원은 민사적 또는 종교적 혼인식에 의해 혼인한 부부에게 합법적 이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종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사적(비종교적) 이혼을 할 경우 종교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거나 종교적 의식에 의해 재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가정법은 종교적 체계 내에서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위의 설명 참고)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캐나다에서 민사적 혼인식에 의해 혼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캐나다 가정법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과의 종교적 이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법에는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종교적 이혼을 약속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 재혼하는 것을 전 배우자가 막으려 할 경우, 법원은 자녀양육권, 자녀양육비 및 배우자부양비, 가족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전 배우자의 가정법 관련 신청에 대한 판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자의 별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지만 합법적으로 혼인하지는 않는 두 사람을 '사실혼자'라고도 합니다. 사실혼자는 별거함으로써 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사실혼자'로 간주되며, 사실혼자가 결별할 경우 어떤 가정법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규칙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실혼자에게 특정한 가정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 3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또는
-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고 두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온타리오 주의 사실혼자는 결별할 경우 자녀양육권 또는 자녀면접교섭권, 자녀양육비 및 배우자부양비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사실혼 관계를 여러 모로 인정하지만,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한 부부가 결별할 경우의 가족 재산 분할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실혼 관계를 종결할 때, 여러분 소유가 아닌 가족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종결될 때의 가정사 관련 결정

별거를 하건 이혼을 하건, 두 당사자는 변호사 및 법원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금전 및 가족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경우, 자녀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권,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비, 가족 재산 분할 등의 가정법 문제의 해결에 관해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날짜를 쓰고 두 사람이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검토하게 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FLEW 웹사이트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e Dispute Resolution)' 및 '별거합의서(Separation Agreements)'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또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현재 학대적이거나 과거에 학대적이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가서 자녀 양육 문제, 재정적 부양, 가족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 후의 가정법상의 권리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자녀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권(Child Custody and Access)',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배우자부양비(Spousal Support)', '가정사 계약(Domestic Contracts)', '가정법상의 재산 분할 규정(How Property is Divided in Family Law)' 등에 관한 책자를 읽어보십시오.

이 자료에 기술된 견해는 FLEW의 견해로서 온타리오 주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온타리오 주 법률재단(Law Foundation of Ontario)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동 재단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종결될 때에는 폭력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현재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911로 전화하십시오.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FLEW 웹사이트에서 도움 받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여성은 가정법 소송에서 프랑스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변호사,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또는 Femaide 핫라인 (1-877-336-2433, TTY 1-866-860-7082)에 문의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또는 www.undroitdefamille.ca 에서 프랑스어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 관련 주제*

1. 대안적 분쟁 해결과 가정법(KOR 001)
2. 아동보호와 가정법(KOR 002)
3. 자녀양육비(KOR 003)
4. 형법과 가정법(KOR 004)
5. 자녀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권(KOR 005)
6. 가정사 계약(KOR 006)
7. 가정법 중재(KOR 007)
8. 이민자, 난민 및 불법체류자 여성의 가정법 문제(KOR 008)
9. 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KOR 009)
10. 가정법상의 재산 분할 규정(KOR 010)
- 11. 혼인 및 이혼(KOR 011)**
12. 배우자부양비(KOR 012)

* 이 책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nefamilylaw.ca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의 가정법상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타 자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Women's Right to Know

fodf Femmes ontariennes et
droit de la famille
Le droit de savoir



Funded by: / Financé par:



이 자료에 기술된 견해는 FLEW의 견해로서 온타리오 주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